

## 4IR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8. 4. 1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LINC+사업단 4IR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(이하 “4IR혁신선도대학사업”이라 한다) 지원 및 확산
2. HATCH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HATCH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구축지원
4.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**제4조(위원회)**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5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0.3.1.>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6조(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)** 4IR혁신선도대학사업 지원과 HATCH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

**제7조(재정)** 본 센터의 재정은 LINC+사업 지원금, 본교 지원금, 4IR혁신선도대학사업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